



K-SOX Audit Preview\*

#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The Implication that US SOX gives to K-SOX

Samjong KPMG K-SOX TFT

January 2020

\* 본 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양국의 제도와 현황을 비교하는 보고서 출간 예정







# 목차

1. Executive Summary	4
2. 韓 내부회계관리제도 vs. 美 ICFR 개요	6
3. 韓 내부회계관리제도 vs. 美 ICFR의견변형 사유 비교	9
4. 美 ICFR 의견변형 주요 사례 분석	15
5.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제재의 차이와 시사점	18
6. 외부감사인과 경영진에 대한 시사점	24

# 1. Executive Summary



##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제도는 미국의 ICFR<sup>1)</sup>에 대한 감사 제도를 참고하여 도입되었기에 그 유사성이 높음

- 미국은 ICFR을 법제화한 2002년 직후인 2004년부터 대규모 상장법인에 대하여 ICFR에 대한 외부감사인 감사 의무화함
- 한국은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을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도입하면서 미국의 ICFR 감사 제도를 참고함
- 따라서 미국이 지금까지 ICFR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사례와 통계는 향후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중요한 정보임



## 비적정 사유의 비중이 미국에서 더욱 높은 영역은, 한국의 기업이 감사 도입에 중점적으로 대비해야 할 영역일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함

- 양국 간 2018년 회계연도 비적정 사유 분석 결과, 한국 기업 의견변형 사유의 약 70%가 회계정보의 통제와 관련된 반면 미국은 그 비율이 8.6%에 불과함
- 미국은 회계인력 전문성 미비, 업무 분장 미흡과 같이 내부통제의 본질적 구성요소와 관련된 사유로 인한 비적정 비중(58.8%)이 한국(6.4%) 대비 확연히 높음



## 미국의 사례를 볼 때,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이후 재무제표 왜곡 및 오류 관련 미비점 없이 내부통제 환경 구축이 미비하다는 사유만으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음

- 2018년에 한국에서 재무제표 왜곡 및 오류 관련 미비점 없이 내부통제 환경 구축이 미비하다는 이유만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없었음
- 미국은 동 기업의 비중이 감사 원년인 2004년엔 8.6%였고, 2018년에는 20.6%로 대폭 증가하였음
- 이러한 차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도입 이후 한국도 미국과 같이 내부통제 환경 구축이 미비하다는 이유만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을 시사함

1)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한국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준하는 미국의 내부통제 제도

## 1. Executive Summary (계속)



### 한국에서 향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재무보고의 목적에 부합하는 미국의 정책을 고려할 수 있음

- 미국은 허위공시에 대하여 강하게 제재하는 한편, 취약점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함
- 이로써 미국 기업이 취약점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숨기기 보다는 충실히 공시하고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유도함
- 이러한 미국의 방식은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재무보고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국내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앞서 미국의 의견변형 사례를 참고하고,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해야 함

-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면서도, 기존 국내 인식이나 현실을 고려할 때 함부로 미비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 존재함
- 이에 미국의 앞선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음
- 또한, 감독당국 및 회사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기존의 인식과 새로운 기준 간의 간극을 좁히면서도 합리적 판단을 하도록 노력해야 함



### 국내 경영진은 자본시장 내 정확한 정보 공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

- 회사의 경영진은 자본시장 내 정확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
- 향후 회사자체의 미비점을 확인하면 이를 숨기기보다는 이러한 미비점의 원인, 보완계획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자발적으로 인식을 가지고 기업 문화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

## 2. 韓 내부회계관리제도 vs. 美 ICFR 개요

### (1)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의 전부개정으로,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상장회사에 대하여 2019년 사업연도부터 자산총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됨
  - » 한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평가 의무를 2003년부터 외부감사법에 항구적으로 법제화하였으나,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전까지는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감사’가 아닌 ‘검토’였음
  - »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전부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2019년 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인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함
  - »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도입 당시 뿐 아니라,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을 ‘감사’로 상향할 때에도 미국의 재무보고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이하 ‘ICFR’) 제도를 적극 참고하였음
- 미국은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이하 ‘SOX법’) 제정(2002)을 통해 ICFR을 도입한 직후인 2004년부터 대규모 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attest)를 의무화 함

[그림1]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연혁



## (1)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계속)

- 자본시장의 성숙도나 각국 내에서의 법률의 제·개정 시기 등 고려 시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미국의 ICFR을 선례로서 일부 모방 또는 참고하여 도입되었음
  - » 국내에는 2001년 8월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미국에는 2002년 7월부터 ICFR이 도입되었기에, 일견 국내가 1년 정도 앞서 있는 것처럼 보임
  - » 그러나, 미국은 1977년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때부터 내부통제(Internal Control)를 본격적으로 규제해 옴
  - » 뿐만 아니라 미국은 검토가 아닌 감사(Attest) 제도를 바로 도입하여, ICFR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지 2020년 기준 17년차에 접어들고 있음

**[표1]**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미국의 ICFR 에 대한 감사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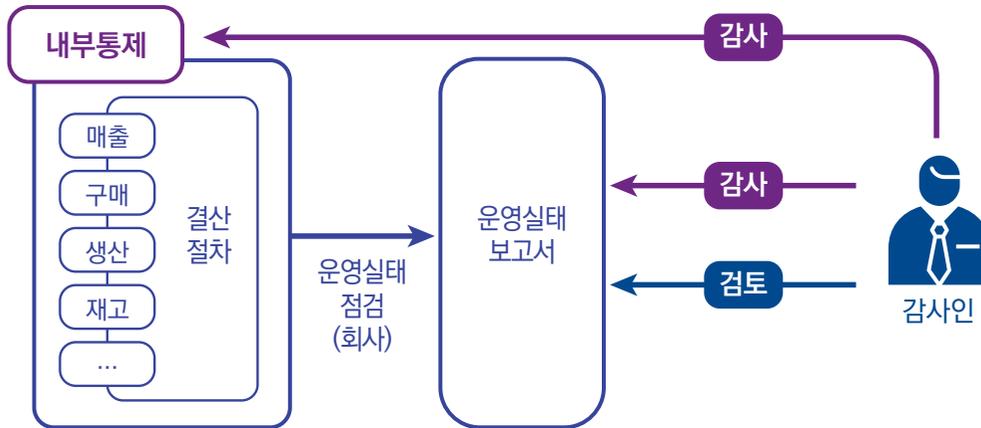
구분	한국	미국										
근거 법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8.6, 부칙 §3	Sarbanes-Oxley Act SEC.404.(b)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 적용 사업연도	<table border="1"> <thead> <tr> <th>자산총액</th> <th>사업연도</th> </tr> </thead> <tbody> <tr> <td>2조원 이상 상장법인</td> <td>2019년~</td> </tr> <tr> <td>5천억원 이상 "</td> <td>2020년~</td> </tr> <tr> <td>1천억원 이상 "</td> <td>2022년~</td> </tr> <tr> <td>상장법인 전체</td> <td>2023년~</td> </tr> </tbody> </table>	자산총액	사업연도	2조원 이상 상장법인	2019년~	5천억원 이상 "	2020년~	1천억원 이상 "	2022년~	상장법인 전체	2023년~	(Public Float <sup>2)</sup> 가 \$7,500만 이상인 기업) 2004년~
자산총액	사업연도											
2조원 이상 상장법인	2019년~											
5천억원 이상 "	2020년~											
1천억원 이상 "	2022년~											
상장법인 전체	2023년~											

2) 공개적으로 발행되어 일반투자자가 보유할 수 있는 주식, '시가총액'에 준함

## (2) ‘검토’와 ‘감사’의 차이 … 종전 韓美 간의 차이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와 ‘감사’의 차이는 **검증 대상**과 그 **수행 절차**에 있음

[그림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와 감사의 검증 대상 차이<sup>3)</sup>



- ‘검토’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 점검한 결과를 보고한 ‘대표이사의 운영실태보고서’를 검증 대상으로 하는 반면, ‘감사’의 경우 운영실태보고서 외에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그 자체(설계와 운영)를 검증 대상으로 함<sup>4)</sup>
  - » 미국의 경우 외부감사인이 ICFR의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을 직접 감사하며, 경영진의 평가보고서도 감사 대상에 포함됨
- ‘검토’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담당자와의 질문 위주로 검증을 수행하는 반면, ‘감사’는 내부통제 관련 문서검사, 통제절차 재수행, 관찰, 질문 등 외부감사인이 직접적으로 검증 절차를 수행함<sup>4)</sup>
  - » ‘감사’는 중대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Reasonable Assurance)을 얻기 위한 것임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문단5)
  - » ‘검토’는 소극적 확신(Negative Assurance)을 제공함. 소극적 확신은 검토대상이 되는 정보(경영진의 평가보고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문단 5.2)
-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미국의 ICFR 감사와 유사하게 도입하였으므로, 상기 서술한 차이는 본 보고서의 주요 분석 대상인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와 ‘미국의 ICFR 감사’의 차이로도 이해할 수 있음

3)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철저한 대비 필요”, 2018.12.14, 보도자료 내 그림을 간략화 함

4)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철저한 대비 필요”, 2018.12.14

### 3. 韓 내부회계관리제도 vs. 美 ICFR 의견변형 사유 비교

#### (1) 분석 방향

-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과 미국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또는 ICFR에 대하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의 **비적정 사유**를 분석함
  - » 한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에 미국의 ICFR 감사 제도를 참고하였음.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현황을 비교하여 도출되는 차이점은, 한국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도입 전 후의 차이점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
  - » 특히 양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또는 ICFR에 대한 **비적정 사유**의 차이는 외부감사인이 ‘검토’에서보다 ‘감사’에서 더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을 나타냄. 이는 이해관계자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정보이기에, 각 국가의 **비적정 사유**를 분석함
  - » 미국의 경우 경영진의 평가보고서에 구술된 비적정 사유를 외부감사인이 인용한 경우가 많으므로, 경영진의 평가보고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살펴봄
- **비적정 사유**의 분류는 미국 상장법인에 대해 다 년 간 ICFR 비적정 사유 분석을 수행해 온 Audit Analytics<sup>5)</sup>의 분류 기준을 참고함<sup>6)</sup>

5) 미국 자본시장에 적용되는 회계·보험·법규 등과 관련해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온라인 기반 Data Base 회사로서 2000년 설립

6) 본 보고서의 [Appendix2]에서 전체 분류 항목을 소개

## (2) 의견변형 사유 비교 1: 사유 개수 기준

- 2018년 사업연도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비적정 ‘검토’의견과 미국의 ICFR에 대한 비적정 ‘감사’의견의 사유를 분류한 결과는 아래 [표2]와 같음
  - » 한국은 2018년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이 비적정이었다면 56개 상장법인의 140개 사유 분석
  - » 미국은 2018년 사업연도 ICFR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비적정이었다면 217개 상장법인의 490개 사유 분석

[표2] 韓 내부회계관리제도 vs. 美 ICFR 의견변형 사유 비중 비교\*7) 8)

비적정 의견 사유	한국		미국	
	개수	비중	개수	비중
<b>재무제표 작성 관련 프로세스 수준 통제 미흡</b>	<b>112</b>	<b>80.00%</b>	<b>180</b>	<b>36.70%</b>
회계정보 통제 (회계정보의 인식·측정·기록·관리 등)	97	69.30%	42	8.60%
재무제표 수정 <sup>9)</sup>	15	10.70%	138	28.20%
<b>내부통제를 위한 환경 구축 미흡</b>	<b>9</b>	<b>6.40%</b>	<b>288</b>	<b>58.80%</b>
업무 분장 미흡	3	2.10%	56	11.40%
회계 분야 인력 및 전문성 부족	1	0.70%	99	20.20%
공시 관련 통제 미흡 <sup>10)</sup>	4	2.90%	60	12.20%
정보기술(IT) 통제 또는 전산시스템 미흡	1	0.70%	73	14.90%
<b>내부감사 미비</b>	<b>1</b>	<b>0.70%</b>	<b>10</b>	<b>2.00%</b>
감사위원회 감독 미흡	1	0.70%	3	0.60%
내부감사부서 불충분 또는 부재	0	0.00%	7	1.40%
<b>경영진의 전문성, 의지, 신뢰성 취약<sup>11)</sup></b>	<b>16</b>	<b>11.40%</b>	<b>5</b>	<b>1.00%</b>
기타	2	1.40%	7	1.40%
<b>총계</b>	<b>140</b>	<b>100%</b>	<b>490</b>	<b>100%</b>

\* Blue: 내부통제의 본질적 구성요소 관련  
 Purple: 내부감사기구 관련

7) 출처 - 한국: 삼정KPMG ACI / 미국: Audit Analytics, "SOX 404 Disclosures: A Fourteen Year Review", 2018.9.

8)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기준

9)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사전제출 재무제표와 감사후 재무제표 간 중요한 변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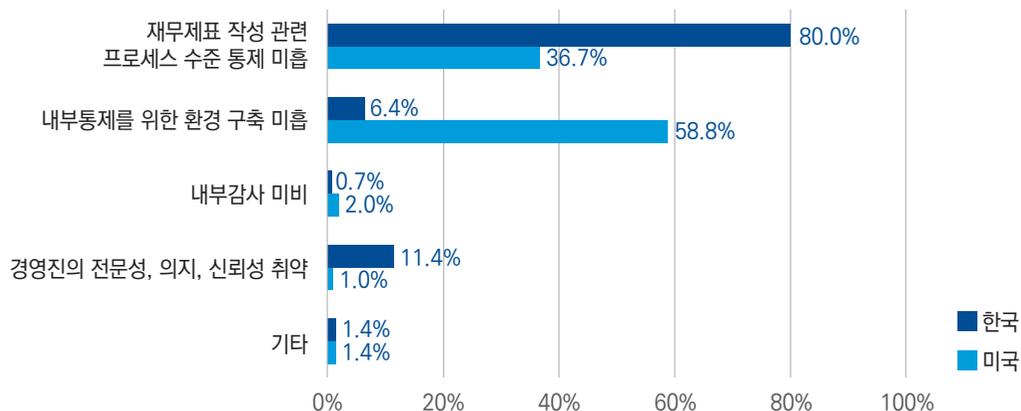
10) 시의성, 정확성, 완전성 측면에서의 공시 통제 미흡, 정정공시 등 상기 업무 분장 미흡, 회계 분야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의견이 변형되는 경우와 연관성 높음

11) 경영진에 의한 부정 발생, 경영진의 평가 미수행, 경영진에 의한 자료 또는 보고서 제출 미흡 등

## (2) 의견변형 사유 비교 1: 사유 개수 기준 (계속)

- 양국의 차이 해석에 앞서, 각각 외부감사인인 '감사(Attest)'와 '검토'의 결과라는 근본적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야 함
- 한국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의 의견변형 사유의 약 70%는 거래 집행, 회계정보의 인식·측정·평가·기록·작성·관리·검토 등 회계정보의 통제와 관련한 분야에서 미비점 또는 취약점이 발견된 데 근거함
  - 미국은 동일 사유 비중이 8.6%에 불과하여 극명한 대비를 이룸
- 미국은 업무 분장 미흡, 회계 분야 인력 및 전문성 부족, 공시 관련 통제 미흡, 정보기술(IT) 통제<sup>12)</sup> 또는 전산시스템 미흡과 같이 내부통제의 본질적 구성요소와 관련된 사유로 인한 비적정을 받은 비중(58.8%)이 한국(6.4%) 대비 확연히 높았음
  - » 업무 분장 미흡: 한국 2.1%, 미국 11.4%
  - » 회계 분야 인력 및 전문성 부족: 한국 0.7%, 미국 20.2%
  - » 공시 관련 통제 미흡: 한국 2.9%, 미국 12.2%
  - » 정보기술(IT) 통제 또는 전산시스템 미흡: 한국 0.7%, 미국 14.9%
- 감사위원회의 감독 미흡으로 인한 비적정 의견 비중은 한국이 1개(0.7%), 미국이 3개(0.7%) 있었음
- 내부감사부서의 운영 미흡이나 부재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또는 ICFR)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경우가 한국에는 전혀 없는 반면 미국은 7개(1.4%)가 있었음
- 양국 간 비적정 사유의 비중이 크게 차이나는 영역은, 한국의 기업이 감사 도입에 중점적으로 대비해야 할 영역일 수 있으므로 미리 참고해야 함

[그림3] 韓 내부회계관리제도 vs. 美 ICFR 의견변형 사유 비중 비교



12) Information Technology General Control, 약어 'ITGC'

### (3) 의견변형 사유 비교 2: 재무제표 관련 사유 유무 기준

- 두번째 비교에서는 **비적정 사유에 재무제표 왜곡이나 오류와 관련된 사유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함
  - » 이를 통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이나 오류 없이, **재무보고를 위한 내부통제 환경의 구축과 관련된 사유만으로도 비적정 의견을 받는 회사**의 비중을 알아보고자 함
- 재무제표 왜곡 및 오류와 관련된 사유는 아래 [표3]과 같음

[표3] 재무제표 왜곡 및 오류 관련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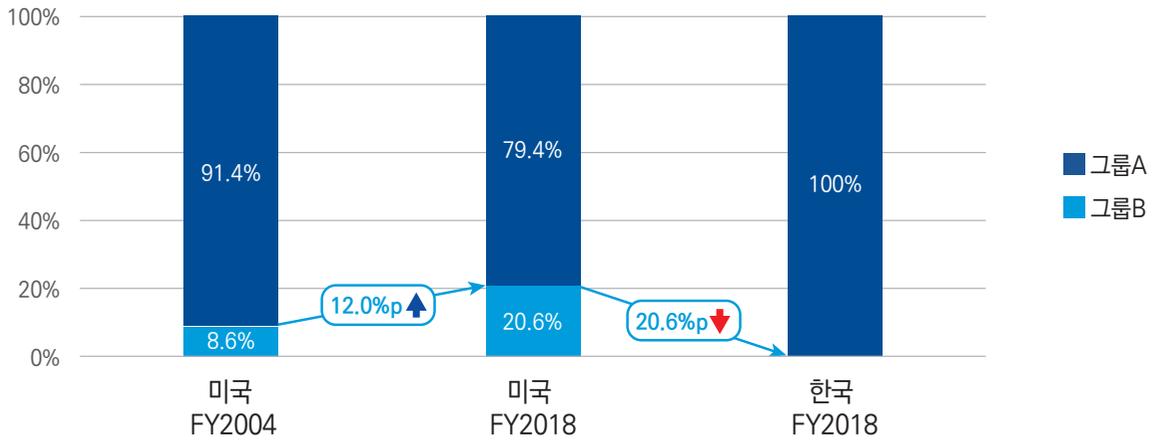
재무제표 왜곡 및 오류 관련 사유
✓ 중요한 재무제표 수정분개 발생
✓ 재무제표 또는 공시자료의 정정 또는 정확도 저하
✓ 비경상적 거래 통제
✓ 전표 분개 통제 미흡
✓ 전기 ICFR 의견 수정
✓ 자금 집행 통제 미흡
✓ 부적절한 계정 조정
✓ 임직원 윤리 문제
✓ 경영진/이사회/감사위원회 내부 조사

- **그룹A**는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중 [표3]의 사유 중 적어도 하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그룹으로, **그룹B**는 [표3]의 사유 중 그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들의 그룹으로 정의함
  - » 즉, 그룹B는 재무제표 왜곡이나 오류 관련 사유 없이, 재무보고 환경의 구축과 관련된 사유만으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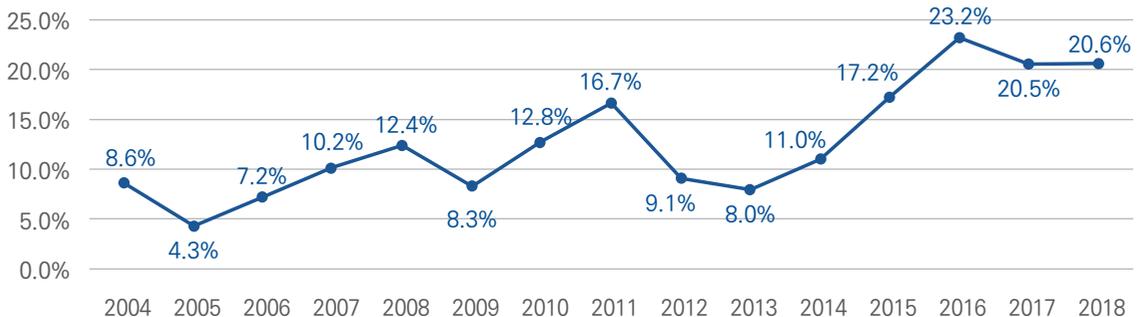
### (3) 의견변형 사유 비교 2: 재무제표 관련 사유 유무 기준 (계속)

- 분석 결과, '검토'가 시행되어 온 한국에서는 2018년 사업연도 기준 그룹B에 해당하는 기업이 없었음
  - » 이는 한국에서 재무제표 왜곡 및 오류 관련 미비점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내부통제 환경 구축이 미비하다는 이유만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비적정 의견을 표명한 사례는 없음을 보여줌
  - » 또한, 한국의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면서 재무제표 왜곡 및 오류가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만 내부통제 환경 구축의 미비함을 지적하였다는 의미로도 해석됨
- 반면 미국의 경우 감사 원년에 그룹B의 비중이 8.6%였고, 14년 후인 2018년에는 동 비중이 20.6%로 대폭 증가함
- 이러한 차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도입 이후에는 한국도 미국처럼 그룹B의 사례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함

[그림4] 韓·美 비적정 의견 회사 대비 그룹별 비중



[그림5] 美 비적정 의견 회사 대비 그룹 B 비중 추이



### (3) 의견변형 사유 비교 2: 재무제표 관련 사유 유무 기준 (계속)

- 2004년~2018년 미국에서 그룹B에 해당하는 기업은 누적 463개사임. 해당 기업의 사유별 기업 비중을 분석한 결과, 회계인력 전문성으로 인한 비중이 가장 높았음
  - » 기업 비중이 높은 사유와 관련된 영역은,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앞서 기업이 중요하게 대비해야 할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4] 2004년~2018년 미국 그룹B 내 사유별 기업 비중(누적)

비적정 의견 사유	회사 수	비중
회계인력 전문성	279개사	60.3%
정보기술 일반통제: ITGC	186개사	40.2%
업무 분장	181개사	39.1%
공시통제	100개사	21.6%
고위경영진 전문성, 신뢰성	30개사	6.5%
감사위원회 비효과성, 부재	21개사	4.5%
내부감사 불충분 또는 부재	15개사	3.2%
준법	11개사	2.4%
의견 제한	8개사	1.7%
SEC 등 당국의 조사	1개사	0.2%
그룹B 기업 전체	463개사	100%

## 4. 美 ICFR 의견변형 주요 사례 분석

### (1) 그룹A 관련 사유(재무제표 왜곡 및 오류 관련 사유)

- 본 장에서는 미국의 ICFR 의견변형의 주요한 사례를 살펴봄. 이를 통하여 비적정 지적의 논리를 참고할 수 있음  
(더 많은 사례는 [Appendix1]에 수록되어 있음)
- 먼저, 재무제표 왜곡 및 오류와 관련된 미비점을 지적한 사례를 살펴봄

#### 사례1 회계정보 통제 (회계정보의 인식·측정·기록·관리 등)

##### 국문번역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재조정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 않았고, 모든 잠재적 오류를 파악하기 위한 검토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분개(journal entry)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승인이 부재하였다.

##### 원문

We did not maintain an effective control environment as evidenced by: (i) reconciliation of balance sheet accounts not being prepared consistently, (ii) lack of precision in review controls to identify all potential errors and (iii) lack of oversight and approval of journal entries.

※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을 유사한 문구로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였음

#### 사례2 재무제표 수정

##### 국문번역

스톡옵션 수정 관련 회계에 대한 내부통제를 설계 및 유지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18년 퇴사한 임원의 건을 처리할 때 중대한 계산 오류가 발생하였다. 임원의 퇴사로 인한 스톡옵션 수정은 본질적으로 일상적이지 않은 업무이다. 이로 인하여 당사가 방지 및 발견하지 못한 연결재무제표상 오류를 수정하였다.

##### 원문

During the course of our evaluation, we determined that we did not design and maintain effective internal control over the accounting for Stock Award Modifications and we had a material calculation error on the separation package adjustments for certain executives departing the organization in 2018. Stock award modifications associated with executive departures are non-routine in nature. This resulted in a material corrected misstatement to expenses and income on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at we did not prevent or detect timely.

※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을 간소화하여 기재하였음

## (2) 그룹B 관련 사유(재무제표 왜곡 및 오류 관련 사유 외)

- 재무제표 왜곡 및 오류와 관련된 미비점 외에, 내부통제 환경 구축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한 사례를 살펴봄
- 본 장에서 소개하는 사례가 모두 그룹B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에, 해당하는 기업에 그룹B임을 기재함

### 사례1 회계인력 전문성

#### 국문번역

재무보고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통제를 US GAAP 및 SEC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회계인력이 부족하였다.

#### 원문

We did not have sufficient financial reporting and accounting personnel to formalize, design, implement and operate key controls over financial reporting process in order to report financi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U.S. GAAP and SEC reporting requirements.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을 간소화하여 기재하였음

본 기업은 '그룹B'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재무제표 왜곡 및 오류 관련 사유 없이 비적정 의견을 받음

### 사례2 정보기술 일반통제: ITGC

#### 국문번역

ERP 시스템 지원 계정이 부적절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식별하였다. 만약 이 계정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거래를 과도하게 변경하였을 수 있다.

#### 원문

Our management has identified a service account (ERP system support) with privileged access. This account, if used improperly, could have had access to system transactions and made undue changes.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을 유사한 문구로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였음

본 기업은 '그룹B'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재무제표 왜곡 및 오류 관련 사유 없이 비적정 의견을 받음

### 사례3 업무 분장

#### 국문번역

US GAAP 하에서 SEC 보고를 수행할만한 인력이 부족하였으며, 이러한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업무 분장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 원문

Lack of sufficient accounting personnel qualified in US GAAP and SEC reporting; and Insufficient accounting staff, which results in a failure to segregate duties sufficiently to ensure a timely and proper preparation and review of the financial statements.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을 간소화하여 기재하였음

본 기업은 '그룹B'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재무제표 왜곡 및 오류 관련 사유 없이 비적정 의견을 받음

## (2) 그룹B 관련 사유(재무제표 왜곡 및 오류 관련 사유 외) (계속)

## 사례4 — 감사위원회 비효과성, 부재

국문번역

내부통제상 문제점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여 감사위원회가 감독 및 시정조치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였다. 조직 전반적으로 정보 소통이 부족하였는데 간혹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에게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유하지 않기도 했다.

원문

Failure to effectively communicate relevant information and internal control deficiencies to our Audit Committee for appropriate oversight, monitoring and enforcement of corrective action. (중략) not communicating relevant information within our organization and, in some cases, withholding information from our independent directors, our Audit Committee, and our independent auditors.

※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을 간소화하여 기재하였음

## 사례5 — 내부감사부서 불충분 또는 부재

국문번역

내부감사부서 관련 정책 및 절차가 미비하였다.

원문

Lack of adequate policies and procedures in internal audit function.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을 간소화하여 기재하였음

본 기업은 '그룹B'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재무제표 왜곡 및 오류 관련 사유 없이 비적정 의견을 받음

## 사례6 — 내부감사부서 불충분 또는 부재

국문번역

내부감사 인력의 규모가 당사의 사업구조와 조직의 규모 및 복잡성에 비해 불충분하였다. 그 결과, 효과적으로 내부통제를 감독하는 데 한계를 초래하였다.

원문

Internal audit staffing levels were insufficient to keep pace with the size and complexity of our business structure and organization, which limited our ability to effectively monitor internal controls.

※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을 간소화하여 기재하였음

## 5.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제재의 차이와 시사점

### (1) 제재 대상 및 내용

- 한국과 미국은 왜곡된 공시 보고서에 책임이 있는 자(서명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이는 각각 내부회계관리제도와 ICFR이 수록된 보고서에 해당됨
  - » 한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잘못된 사실이 기재된 사업보고서에 서명한 대표이사 및 제출담당 이사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음
  - » 미국의 SOX법에서는 잘못된 사실이 기재된 정기보고서에 서명한 CEO 및 CFO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음
- 왜곡된 공시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강도가 한국의 제재 강도보다 높음

[표5] 자본시장법 및 SOX법 공시 관련 책임자 처벌

구분		제재		
		대상	벌금	징역
한국	고의적 공시 위반	대표이사, 제출담당 이사	최대 2억원	최대 5년
미국	고의적 공시 위반	CEO, CFO	최대 5백만 달러 (한화 약 58억원)	최대 20년
	과실에 의한 공시 위반		최대 1백만 달러 (한화 약 11.5억원)	최대 10년

[표5-1] 공시 관련 책임자 처벌 법규: 한국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⑦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제160조 후단 또는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라.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 (1) 제재 대상 및 내용 (계속)

[표5-2] 공시 관련 책임자 처벌 법규: 미국 SOX법

Sarbanes-Oxley Act	
SEC. 906. CORPORATE RESPONSIBILITY FOR FINANCIAL REPORTS.	
§ 1350. Failure of corporate officers to certify financial reports	
(a) CERTIFICATION OF PERIODIC FINANCIAL REPORTS. – Each periodic report containing financial statements filed by an issuer with the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pursuant to section 13(a) or 15(d)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15 U.S.C. 78m(a) or 78o(d)) shall be accompanied by a written statement by the chief executive officer and chief financial officer (or equivalent thereof) of the issuer.	
(c) CRIMINAL PENALTIES. – Whoever –	
(1) certifies any statement as set forth in subsections (a) and (b) of this section knowing that the periodic report accompanying the statement does not comport with all the requirements set forth in this section shall be fined not more than \$1,000,000 or imprisoned not more than 10 years, or both; or	
(2) willfully certifies any statement as set forth in subsections (a) and (b) of this section knowing that the periodic report accompanying the statement does not comport with all the requirements set forth in this section shall be fined not more than \$5,000,000, or imprisoned not more than 20 years, or both.”.	

[표6] ICFR 관련 공시 위반에 따른 제재 사례 (2014.8)

기업	위반 내용	제재 내용
Q사 (컴퓨터부품업)	CEO와 CFO가 ICFR에 대해 허위 공시 - 재고관리에 대한 통제 미흡, 매출채권 과대 계상 등	CEO: · 벌금 \$7,500 CFO: · 벌금 \$23,000 · 5년간 상장회사 임원 제한 · 5년간 상장회사 및 SEC 규제하의 기관에서 회계사로서의 직무 제한

- 한국과 미국이 공시 관련 제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반면, 그 외에는 두 국가의 제재 방향에 차이가 있음
  - » 미국은 공시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에 방점을 두고, 그 외 개별 위반 사항은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를 보임
    - 한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위반 사항 별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음([표5] 참고)
    - 반면, 미국은 한국과 같이 세부적인 사항 별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 이는 회사의 통제미비를 국가 차원에서 직접 제재하는 규정을 두기보다는, 이를 시장에 정확히 알리고 시장의 판단에 맡기려는 의도로 해석됨

## (1) 제재 대상 및 내용 (계속)

[표기] 한국 법제대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세부 제재

No.	구분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관련 법규
1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 임직원	기본조치 기중	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1] §Ⅵ.2.가.5)
		내부회계관리규정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회사, 임직원	중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판단	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1] §Ⅲ.2.가.2)
2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평가·보고 등의 의무 위반 시		회사	외부감사인 지정	외부감사법 §11.1.12, 동법 시행령 §14.6.3.나
3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감사(위원)을 포함한 임원, 회계업무 담당자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부감사법 §41.1
4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한 자		회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외부감사법 §47.2.1
5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대표자		
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		
7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감사(위원)		
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 및 감사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자		외부감사인		
9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에 기인한다고 판단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시		회사	감리 <sup>13)</sup>	외감규정 §23.8
10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시		코스닥 기업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28-2.1.2.가
11	2개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시		코스닥 기업	상장실질심사, 심사 후 상장폐지도 가능	코스닥시장상장규정 §38.2.5.하
12	2개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시 <sup>14)</sup>		회사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계약 해지 가능	외부감사법 §15.2, 동법 시행령 §21.3.2

13) 회사가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감리를 실시할 때, 필요 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감리 (외부감사법 §26.1.4, 동법 시행령 §29)

14)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 의견 기준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한정

## (2)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기간 부여

- 한국은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제재 요건이 갖추어 지면 즉각적으로 제재 절차가 개시되는 것과 달리, 미국은 상당한 시정기간을 제공함
  - » 미국의 경우 포괄적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 중이거나,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을 때, SEC가 이를 공고하고 해당 행위 중지를 명령할 수 있음
    - 이러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제재가 주어지며, 미비점이 발생한 직후 제재하기 보다는, 기업이 시정할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제재함

[표8] 미국 시정 조치 명령 위반 관련 과징금 규정

구분	설명	과징금
1 <sup>st</sup> Tier	SEC가 명한 중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 자연인: 최대 5천달러 - 그 밖의 자 <sup>15)</sup> : 최대 5만달러
2 <sup>nd</sup> Tier	SEC의 중지명령을 위반하되, 해당 위반이 아래와 관련될 경우 - 사기, 기만, 조작 또는 규정 요건에 대한 고의적이거나 부주의한 무관심과 관련된 경우	- 자연인: 최대 5만달러 - 그 밖의 자: 최대 25만달러
3 <sup>rd</sup> Tier	SEC의 중지명령을 위반하되, 해당 위반이 아래와 관련될 경우 - 사기, 기만, 조작 또는 규정 요건에 대한 고의적이거나 부주의한 무관심과 관련된 경우 - 그 위반이 직·간접적으로 실질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 자연인: 최대 10만달러 - 그 밖의 자: 최대 50만달러

[표8-1] 미국 시정 조치 명령 위반 관련 과징금 규정 원문

###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 SEC. 21C. CEASE-AND-DESIST PROCEEDINGS

- (a) AUTHORITY OF THE COMMISSION. – If the Commission finds, after notice and opportunity for hearing, that any person is violating, has violated, or is about to violate any provision of this title, or any rule or regulation thereunder, [the Commission may publish its findings and enter an order requiring such person, and any other person that is, was, or would be a cause of the violation, due to an act or omission the person knew or should have known would contribute to such violation, to cease and desist from committing or causing such violation and any future violation of the same provision, rule, or regulation.](#) Such order may, in addition to requiring a person to cease and desist from committing or causing a violation, require such person to comply, or to take steps to effect compliance, with such provision, rule, or regulation, up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nd within such time as the Commission may specify in such order. Any such order may, as the Commission deems appropriate, require future compliance or steps to effect future compliance, either permanently or for such period of time as the Commission may specify, with such provision, rule, or regulation with respect to any security, any issuer, or any other person.

15) '그 밖의 자'란, 'any other person'을 직역한 것으로, 자연인(natural person) 외의 person을 의미하므로, 법인이나 조합 등을 의미함

## (2)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기간 부여 (계속)

[표8-1] 미국 시정 조치 명령 위반 관련 과징금 규정 원문 (계속)

<b>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b>	
<b>SEC. 21B. CIVIL REMEDIES IN ADMINISTRATIVE PROCEEDINGS</b>	
(a) COMMISSION AUTHORITY TO ASSESS MONEY PENALTIES. –	
(2) CEASE-AND-DESIST PROCEEDINGS. – In any proceeding instituted under section 21C against any person, the Commission may impose a civil penalty, if the Commission finds, on the record after notice and opportunity for hearing, that such person –	
(A) is violating or has violated any provision of this title, or any rule or regulation issued under this title; or	
(B) is or was a cause of the violation of any provision of this title, or any rule or regulation issued under this title.	
(b) MAXIMUM AMOUNT OF PENALTY. –	
(1) FIRST TIER. – The maximum amount of penalty for each act or omission described in subsection (a) shall be \$5,000 for a natural person or \$50,000 for any other person.	
(2) SECOND TIER.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maximum amount of penalty for each such act or omission shall be \$50,000 for a natural person or \$250,000 for any other person if the act or omission described in subsection (a) involved fraud, deceit, manipulation, or deliberate or reckless disregard of a regulatory requirement.	
(3) THIRD TIER. –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the maximum amount of penalty for each such act or omission shall be \$100,000 for a natural person or \$500,000 for any other person if –	
(A) the act or omission described in subsection (a) involved fraud, deceit, manipulation, or deliberate or reckless disregard of a regulatory requirement; and	
(B) such act or omission directly or indirectly resulted in substantial losses or created a significant risk of substantial losses to other persons or resulted in substantial pecuniary gain to the person who committed the act or omission.	

- 앞서 설명한 증권거래법 21C조에 따라 올해 초에 처벌 받은 실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9] ICFR 위반에 따른 실제 제재 사례 (2019.1)

기업	위반 내용	과징금 (기업)
S사 (제철업)	10년 간 중대한 취약점 보유, 2년 간 경영진이 ICFR 효과성 평가 미실시	\$200,000
L사 (음료제조업)	9년 간 중대한 취약점 보유, 2년 간 경영진이 ICFR 효과성 평가 미실시	\$100,000
D사 (광고업)	7년 간 중대한 취약점 존재	\$100,000
C사 (제약업)	9년 간 중대한 취약점 존재	\$35,000

### (3) 한국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제재 방향에 대한 시사점

- 미국의 경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접 제재함으로써 기업의 ICFR 개선을 유도하기 보다는, 기업이 ICFR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함
-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ICFR에 기반한 올바른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더불어 허위공시에 대한 규제는 강하게 하고 있음
  - » 또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공고하고 중지 명령을 하되, 상당한 시정 기간을 제공하여 기업이 각 사정에 맞게 시정할 수 있도록 함
- 따라서 미국 기업은 취약점이 있을 경우 취약점에 대한 설명과 개선 계획을 공시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영진 자체 평가에서 중대한 취약점을 공시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실제로 2018년 미국에서 ICFR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고 경영진의 자체 평가만을 수행하는 소규모 기업들 중 39.6%가 ICFR에 대한 중대한 취약점을 공시하고 있음<sup>16)</sup>
- 또한, 미국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ICFR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 한 연구에 따르면, ICFR상 중대한 취약점이 공시된 바로 다음날 해당 기업의 주가는 시장 전체의 가격 움직임 대비 0.67% 하락하였고, 하락율이 일주일 후에는 0.90%, 한 달 후에는 1.96%, 2개월 후에는 무려 4.06%로 나타남<sup>17)</sup>
  - » ICFR에 대한 공시 지연이 있는 기업과 ICFR상 취약점이 있는 경우 주가 수익률이 음(-)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ICFR이 효과적인 경우 주가 수익률이 양(+)인 경향이 나타남<sup>18)</sup>
  - » ICFR상 취약점을 최초로 공시한 기업은 시장조정 자본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며, ICFR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기업은 동 비용이 감소함<sup>19)</sup>
- 한국과 같이 세부적 위반사항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는 것은 이해관계자가 관련 제재에 대해 보다 예상이 쉽다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
  - » 다만, 재무보고의 목적이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한국은 미국의 제도와 적용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6) Audit Analytics, "SOX 404 Disclosures: A Fifteen Year Review", 2019.9

17) Risk & Compliance, "How Markets Punish Material Weaknesses", 2005.7

18) Zabihollah Rezee 외 3인, "Firm Characteristics and Stock Price Reaction to SOX 404 Compliance", 2012.12

19) Hollis Ashbaugh-Skaife 외 3인, "The Effect of SOX Internal Control Deficiencies on Firm Risk and Cost of Equity", 2009.1

## 6. 외부감사인과 경영진에 대한 시사점

### (1) 외부감사인에 대한 시사점

-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가 제정됨에 따라 감독당국의 감리 대상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게 되었음
- 이와 유사한 미국의 PCAOB 감리(Inspection)에서도 ICFR에 대한 강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의 감독당국 또한 이러한 기초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음
  - » PCAOB에서는 매년 감리에 앞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둘 지에 대한 안내문을 발표하는데, 2019년 안내문인 'Inspections Outlook for 2019'에서도 ICFR에 대한 감사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힘
-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기존에 한국에서 비적정 사유의 비중이 적었던 '업무 분장 미흡'과 같은 영역들, 즉 기존 한국 인식상 중요하지 않았던 영역들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해야 할 지 고민이 많음
  - » 이와 관련한 금융당국과 회계법인 이해관계자들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즉, 외부감사인은 감독당국의 감리 등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면서도, 기존 한국의 인식이나 현실을 고려할 때 함부로 미비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는 상황임
  - » 이러한 영역을 판단할 때, 외부감사인은 미국의 앞선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감독당국 및 회사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기존의 인식과 새로운 기준 사이의 간극을 좁히면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2) 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시사점

- 앞선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2018년 ICFR에 대하여 경영진의 평가만 수행하는 기업 중 39.6%가 스스로 ICFR에 대한 비적정의견을 표명하였음
  - » 한국에서 제3자의 평가 없이 자체적인 평가만을 수행했을 때, 스스로에게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고 그 미비한 사항들을 시장에 공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
  - » 이러한 차이는 그 원인을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으나, 공시의 정확성을 더욱 중시하는 미국의 제재 방식 뿐 아니라 정서나 문화적 차이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부터 기인하였을 것임
- 양국의 특징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다만, 자본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
  - » 이러한 측면에서, 회사는 향후 회사자체의 미비점을 확인하면 이를 숨기기 보다는 이러한 미비점의 원인, 보완계획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 기업 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의지(Tone at the top)가 가장 중요함을 인지하고, 경영진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인식을 가져야 함

# [Appendix 1] 美 ICFR 의견변형 사유별 사례 분석

## (1) 회계정보 통제 (회계정보의 인식·측정·기록·관리 등)

“ 회계정보의 인식· 측정·기록·관리 미흡으로 비적정의견이 나온 것은 다른 내부통제 구성요소가 미비된 데 따른 사후적 결과라 볼 수 있다. ”

### 유형1 “잘못된 수익 인식 방법 적용”

#### 국문번역

내부통제상 문제점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여 감사위원회가 감독 및 시정 조치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였다. 조직 전반적으로 정보 소통이 부족하였는데 간혹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에게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유하지 않기도 했다.

#### 원문

An error was discovered related to the Company's historical revenue recognition policies and procedures. In particular, the Company determined that for certain contracts within its Energy Segment for which revenue was historically recognized upon contract completion and transfer of title, the Company instead should have applied the percentage-of-completion method in accordance with the FASB's Accounting Standards Codification No. 605-35, Construction-Type and Production-Type Contracts.

※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을 간소화하여 기재하였음

### 유형2 “회계통제 절차 전반적으로 취약”

#### 국문번역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재조정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 않았고, 모든 잠재적 오류를 파악하기 위한 검토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분개(journal entry)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승인이 부재하였다.

#### 원문

We did not maintain an effective control environment as evidenced by: (i) reconciliation of balance sheet accounts not being prepared consistently, (ii) lack of precision in review controls to identify all potential errors and (iii) lack of oversight and approval of journal entries.

※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을 간소화하여 기재하였음

### 유형3 “회계정보 문서화가 미흡”

#### 국문번역

재무제표 및 회사 내부의 재무보고서와 관련하여, 경영진은 재무제표의 정확성에 대한 검토 과정이 정확하게 문서화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 원문

In the area of financial statements/internal financial reports, management determined that the review of the accuracy of the financial statements was not documented with sufficient precision.

※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을 유사한 문구로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였음

## (2) 재무제표 수정

“  
내부통제의 미비로  
인하여 재무제표  
수정이 발생한 경우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  
”

### 유형1 “비경상적 상황에 대한 통제 미비로 재무제표 수정 발생”

#### 국문번역

스톡옵션 수정 관련 회계에 대한 내부통제를 설계 및 유지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18년 퇴사한 임원의 건을 처리할 때 중대한 계산 오류가 발생하였다.  
임원의 퇴사로 인한 스톡옵션 수정은 본질적으로 일상적이지 않은 업무이다.  
이로 인하여 당사가 방지 및 발견하지 못한 연결 재무제표상 오류를 수정하였다.

#### 원문

During the course of our evaluation, we determined that we did not design and maintain effective internal control over the accounting for Stock Award Modifications and we had a material calculation error on the separation package adjustments for certain executives departing the organization in 2018. Stock award modifications associated with executive departures are non-routine in nature. This resulted in a material corrected misstatement to expenses and income on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at we did not prevent or detect timely.

※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을 간소화하여 기재하였음

### 유형2 “회계정책 적용 관련 통제 미비로 재무제표 수정 발생”

#### 국문번역

회계정책 변경 및 관련 통제 적용에 대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그 결과 2018년 1월부터 적용되는 수익인식 회계기준인 ASC 606을 적용하고 관련 통제를 수립하는 것이 지연되었다. 이로 인해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기간 중 재무제표에 몇 가지 수정이 발생하였다.

#### 원문

We also did not have a robust process around managing change and corresponding assessment and implementation of Accounting Policies. Furthermore, it also resulted in the delayed assessment and design of controls for the timely implementation of controls around Accounting Standard 606 (ASC 606) for Revenue Recognition which was effective January 2018. These gaps resulted in several adjustment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as of the end of the period covered by this report.

※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을 간소화하여 기재하였음

### (3) 업무 분장 미흡

“  
‘업무 분장 미흡’을 ICFR 비적정 의견의 근거로 제시한 경우, 어떤 분야에서의 업무 분장이 취약하였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구술하는 경우가 많았다.”

#### 유형1 “업무 분장 미흡을 ITGC와 연계”

##### 국문번역

접근 권한에 대한 통제가 부적절하게 이행됨에 따라, IT 직원들이 유통 및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은행의 핵심 IT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는 유통 및 지원 업무와 연관이 떨어져, 업무 분장 간 충돌을 야기하였다.

##### 원문

As a result of improper risk assessment in deploying control activities around access policy, access to the core banking IT system was granted by IT personnel to retail and back office personnel that was not commensurate with assigned job responsibilities, and therefore created segregation of duties conflicts.

※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과 동일한 문구를 기재하였음

#### 유형2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분장 미흡”

##### 국문번역

US GAAP 하에서 SEC 보고를 수행할만한 인력이 부족하였으며, 이러한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업무 분장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 원문

Lack of sufficient accounting personnel qualified in US GAAP and SEC reporting; and Insufficient accounting staff, which results in a failure to segregate duties sufficiently to ensure a timely and proper preparation and review of the financial statements.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을 간소화하여 기재하였음

‘그룹B’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재무제표 왜곡 및 오류 관련 사유 없이 비적정 의견을 받음

#### 유형3 “업무 분장 미흡을 계정 조정과 연계”

##### 국문번역

이연 수익 조정과 관련한 부적절한 업무 분장이 (재무정보의) 정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상 잠재적인 오류를 시의성 있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 원문

Management did not have effective segregation of duties over the preparation and subsequent review of its deferred revenue reconciliation process at a sufficient level of precision to timely detect potential misstatements of the related income statement and balance sheet accounts.

※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을 간소화하여 기재하였음

## (4) 회계 분야 인력 및 전문성 부족

“ 회계기준 뿐 아니라 내부통제와 직접 연관된 COSO 2013 Framework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한 사례들도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

### 유형1 “US GAAP 관련 인력 및 전문성 부족”

#### 국문번역

재무보고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통제를 US GAAP<sup>20)</sup> 및 SEC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회계인력이 부족하였다.

#### 원문

We did not have sufficient financial reporting and accounting personnel to formalize, design, implement and operate key controls over financial reporting process in order to report financi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U.S. GAAP and SEC reporting requirements.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을 간소화하여 기재하였음  
 ‘그룹B’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재무제표 왜곡 및 오류 관련 사유 없이 비적정 의견을 받음

### 유형2 “IFRS 관련 인력 및 전문성 부족”

#### 국문번역

이러한 취약점들은 IFRS 9 도입과 관련한 리스크 평가와 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기인한다. 또한 IFRS-IASB<sup>21)</sup>의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으며 IFRS-IASB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숙련된 인력이 수적으로 부족하였다.

#### 원문

These weaknesses arose mainly due to an ineffective risk assessment process and monitoring of the Bank’s plan to adopt IFRS 9, and an ineffective understanding of the disclosure requirements of IFRS-IASB and an insufficient number of appropriately trained personnel on the application of IFRS-IASB.

※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을 유사한 문구로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였음

### 유형3 “COSO 2013에 대한 교육 부족”

#### 국문번역

COSO 2013 Framework<sup>22)</sup>에 대한 이해, 재무보고에 동 Framework를 적용하는 방안, 내부통제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직원 대상 교육이 불충분하였다.

#### 원문

Our personnel did not have sufficient training on the COSO 2013 Framework and its implications on financial reporting and their related internal control roles and responsibilities.

※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을 유사한 문구로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였음

20)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21)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국제회계기준위원회

22)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활동의 5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내부통제 체계

## (5) 공시 관련 통제 미흡

“  
공시 통제 미흡  
자체가 의견변형에  
주된 원인이기보다는  
다른 내부통제  
요소 결점에 의한  
경우가 많다.  
”

### 유형1 “공시 미흡이 있는 계정과목을 구체적으로 언급”

#### 국문번역

당사의 해외 사업 영업권에 관한 가치 산정 및 공시의 정확성에 대한 통제와, 사업 인수 관련 이연법인세에 관한 가치 산정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통제가 취약하였다.

#### 원문

We did not design and maintain effective controls over the (a) accuracy, valuation, and presentation and disclosure for allocating goodwill to our international businesses and (b) completeness, accuracy, and valuation of deferred income taxes recorded in connection with business combinations

※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인용하였음

### 유형2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공시 통제를 충분히 하지 못 함”

#### 국문번역

FHFA(미국 연방 주택 금융청)의 관리·감독 하에서, 공시 통제 및 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일부 정보(재무 정보 포함)를 FHFA에서만 취급하고 있어 금융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공시를 수행하지 못 하고 있다.

#### 원문

We identified a material weakness related to our inability to update our disclosure controls and procedures in a manner that adequately ensures the accumulation and communication to management of information known to FHFA that is needed to meet our disclosure obligations under the federal securities laws, including disclosures affecting our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을 간소화하여 기재하였음

‘그룹B’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재무제표 왜곡 및 오류 관련 사유 없이 비적정 의견을 받음

### 유형2 “인력 부족, 커뮤니케이션 미흡 등 원인과 함께 제시”

#### 국문번역

재무보고 인력, 경영진, 이사회에 제공되는, 업무와의 관련성 및 신뢰도가 확보된 내·외부 정보에 대한 시의성 있는 파악과 커뮤니케이션 이 불충분하였다. 그 결과, 재무 보고에 대한 검토와 공시의 적절성이 저하되었다.

#### 원문

We did not have sufficient processes and controls in place to ensure the timely identification and communication of relevant and reliable information sourced internally and externally to financial reporting personnel, management, and the Board of Directors, to enable appropriate measurement and disclosure of such information in our financial reporting processes

※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을 유사한 문구로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였음

## (6) 정보기술(IT) 통제 또는 전산시스템 미흡

“ ITGC와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사용자에게 시스템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

### 유형1 “부적절한 접근 권한의 부여”

#### 국문번역

재무보고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통제를 US GAAP<sup>20)</sup> 및 SEC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회계인력이 부족하였다.

#### 원문

We did not have sufficient financial reporting and accounting personnel to formalize, design, implement and operate key controls over financial reporting process in order to report financi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U.S. GAAP and SEC reporting requirements.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을 유사한 문구로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였음  
 ‘그룹B’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재무제표 왜곡 및 오류 관련 사유 없이 비적정 의견을 받음

### 유형2 “변경관리<sup>23)</sup> 미흡을 지적”

#### 국문번역

재무보고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IT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을 관리하는 통제 절차를 적절히 운영하지 못하였다.

#### 원문

We did not design and maintain effective program change management controls over certain of our information technology (“IT”) operating systems, databases and IT applications that support the Company’s financial reporting processes.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과 동일한 문구를 기재하였음  
 ‘그룹B’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재무제표 왜곡 및 오류 관련 사유 없이 비적정 의견을 받음

### 유형3 “IT 인력의 전문성 부족”

#### 국문번역

당사의 전반적인 재무보고 및 정보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준의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다.

#### 원문

We did not have sufficient and experienced personnel to address the Company’s overall financial report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quirements.

※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인용하였음

#### 국문번역

IT 통제의 설계와 적용에 관한, IT 직원 대상 교육이 불충분하였다.

#### 원문

There was also insufficient training of IT personnel on how to design and implement ITGCs.

※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을 간소화하여 기재하였음

23) 프로그램 버전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 등

## (7) 감사위원회 감독 미흡

“  
 감사위원회의 자체적인 문제로 구술되기 보다는 경영진 또는 조직 차원의 원인으로 인해 감사위원회에 의한 내부통제 감독이 결과적으로 미진해졌다고 설명되어 있었다. 예컨대, 조직 차원에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았거나 경영진이 회계 전문성을 보유한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구술되어 있었다.”

### 유형1 “감사위원회에 정보 공유 미흡”

#### 국문번역

내부통제상 문제점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여 감사위원회가 감독 및 시정 조치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였다. 조직 전반적으로 정보 소통이 부족하였는데 간혹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에게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유하지 않기도 했다.

#### 원문

Failure to effectively communicate relevant information and internal control deficiencies to our Audit Committee for appropriate oversight, monitoring and enforcement of corrective action. ( ) not communicating relevant information within our organization and, in some cases, withholding information from our independent directors, our Audit Committee, and our independent auditors.

※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을 간소화하여 기재하였음

### 유형2 “감사위원회의 회계 전문성 부족”

#### 국문번역

경영진은 재무보고 관련 충분한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임직원을 고용 또는 관리하는 데 미진하였다.

(시정조치로) 감사위원회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당사의 산업 관련 경력이 풍부한 재무 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추가 선임하였다.

#### 원문

Management did not effectively execute a strategy to hire and retain a sufficient complement of personnel with an appropriate level of knowledge, experience, and training in certain areas important to financial reporting.

(Remediation Plan) Appointed an additional independent director to the Audit Committee of the SC Board with extensive experience as a financial expert in SC's industry to provide further experience on the committee

※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을 간소화하여 기재하였음

## (8) 내부감사부서 불충분 또는 부재

“ 내부감사부서 인력의 부족이나 부서의 부재는 그 자체만으로 내부통제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

### 유형1 “내부감사 인력의 부족에 초점”

**국문번역**

내부감사 인력의 규모가 당사의 사업구조와 조직의 규모 및 복잡성에 비해 불충분하였다. 그 결과, 효과적으로 내부통제를 감독하는 데 한계를 초래하였다.

**원문**

Internal audit staffing levels were insufficient to keep pace with the size and complexity of our business structure and organization, which limited our ability to effectively monitor internal controls.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을 간소화하여 기재하였음

### 유형2 “내부감사부서의 부재 사실만 언급”

**국문번역**

예방 기능을 갖춘 내부통제 절차의 일관성을 감독하는 내부감사부서가 부재하였다.

**원문**

Lack of a functional internal audit department that monitors the consistencies of the preventive internal control procedures.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과 동일한 문구를 기재하였음

### 유형3 “내부감사부서의 부재의 원인을 언급”

**국문번역**

회계부서가 소규모임에 따라 내부감사부서도 설치하지 않았다.

**원문**

The Company does not have an internal audit department due to the small size of its accounting department.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을 간소화하여 기재하였음

**‘그룹’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재무제표 왜곡 및 오류 관련 사유 없이 비적정 의견을 받음**

### 유형4 “내부감사 관련 정책 및 절차의 미비”

**국문번역**

내부감사부서 관련 정책 및 절차가 미비하였다.

**원문**

Lack of adequate policies and procedures in internal audit function.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을 간소화하여 기재하였음

**‘그룹’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재무제표 왜곡 및 오류 관련 사유 없이 비적정 의견을 받음**

## (9) 경영진의 전문성, 의지, 신뢰성 취약

“  
이사회의 감독 능력이  
나 경영진의 의지는  
ICFR의 적절한 구축 및  
운영의 필요조건이다.  
”

### 유형1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독 능력 부족”

#### 국문번역

내부통제의 효과적 구축 및 운영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이사회의 능력과 관련해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  
예컨대, 조직 내에서 적절한 정보를 소통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정보 전달이 되지 않았다.

#### 원문

The material weakness relating to: the abil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to effectively exercise oversight of the development and performance of internal control, as a result of failure to communicate relevant information within the organization and, in some cases, withholding information

※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과 동일한 문구를 기재하였음

### 유형1 “경영진의 의지(Tone at the top) 부족”

#### 국문번역

“경영진의 의지” 부족으로 인해, ICFR과 관련된 메커니즘 및 감독이 적절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다. 또한, 시정조치가 적절한 우선순위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수행된다는 확신도 얻을 수 없다.  
통제 담당자 리스크 및 자기평가 프로세스 감독 절차 수립과 관련하여 “경영진의 의지”가 미비하였고, 이로 인하여 리스크 평가에 대한 책임이나 통제의 설계 및 효과성에 대한 확신이 명확하지 않다.

#### 원문

The “tone at the top” was insufficient to ensure there were adequate mechanisms and oversight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the performance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responsibilities and to ensure corrective actions were appropriately prioritized and implemented in a timely manner.  
There was a lack of appropriate “tone at the top” in establishing an effective control owner risk and controls self-assessment process which contributed to a lack of clarity about ownership of risk assessments and control design and effectiveness.

※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을 간소화하여 기재하였음

## (10) 연결 재무제표 또는 자회사 관련 사유<sup>1)</sup>

“ 자회사의 취약한 내부통제는 연결 재무제표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유형1 “연결 재무제표 회계처리 미흡”

#### 국문번역

당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은 해외 자회사의 현금흐름표 내 외환 계산상 오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 원문

Our internal controls failed to identify the mathematical error contained in the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calculation in the statement of cash flows of our foreign subsidiary that are incorporated in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을 간소화하여 기재하였음

### 유형2 “연결 자회사의 재무 역량 및 인력 부족”

#### 국문번역

당사의 자회사 B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환경을 구축하지 못하였다. 예컨대, 해당 자회사의 회계처리 플랫폼과 전반적인 재무보고 프로세스에 대한 적절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수가 부족하였다.

#### 원문

We did not maintain an effective control environment at our B subsidiary as evidenced by: an insufficient number of personnel with an appropriate level of knowledge of the Company's processing platforms and overall financial reporting process.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을 유사한 문구로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였음

### 유형3 “연결 자회사의 ITGC 미흡”

#### 국문번역

최근 인수한 자회사의 정보기술 일반통제(ITGC)와 관련한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 해당 자회사의 ITGC는 부적절한 사용자 접근 문제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였다.

#### 원문

A material weakness related to the Company's assessment of changes in internal control related to a recently acquired subsidiary's information technology general controls which did not timely identify inappropriate user access issues at the subsidiary has been identified and included in management's assessment.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이 진단한 취약점과 동일한 문구를 기재하였음

24) Audit Analytics 분석에는 미포함

## [Appendix 2] Audit Analytics가 분류한 ICFR 비적정 사유

[표10] Audit Analytics가 분류한 ICFR 비적정 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또는 ICFR 비적정 사유
Material and/or numerous auditor /YE adjustments (중요한 재무제표 수정분개 발생)
Restatement or nonreliance of company filings (재무제표 또는 공시자료의 정정 또는 정확도 저하)
Non-routine transaction control issues (비경상적 거래 통제)
Journal entry control issues (전표 분개 통제 미흡)
Restatement of previous 404 disclosures (전기 ICFR 의견 수정)
Treasury Control Issues (자금 집행 통제 미흡)
Untimely or inadequate account reconciliations (부적절한 계정 조정)
Information technology, software, security & access issues (정보기술 일반통제: ITGC)
Segregations of duties/ design of controls (personnel) (업무 분장)
Inadequate disclosure controls (timely, accuracy, completeness) (공시통제)
Ineffective, non-existent or understaffed audit committee (감사위원회 비효과성, 부재)
Insufficient or non-existent internal audit function (내부감사 불충분 또는 부재)
Accounting personnel resources, competency/training (회계인력 전문성)
Senior management competency, tone, reliability issues (고위경영진 전문성, 신뢰성)
Ethical or compliance issues with personnel (임직원 윤리 문제)
Management/Board/Audit Committee investigation(s) (경영진/이사회/감사위원회 조사)
SEC or other regulatory investigations and/or inquiries (SEC 등 당국의 조사)
Ineffective regulatory compliance issues (준법)
Scope (disclaimer of opinion) or other limitations (의견 제한)
SAB 108 adjustments noted (SAB 108 적용 미비)

## [Appendix 3] 미국 소규모 기업에 대한 ICFR 감독 완화 동향

• 미국에서는 약 10년에 걸쳐 소규모 기업의 ICFR에 대한 감독 완화가 논의되어 왔다.

» 미국은 아래 [그림6]과 같이 ICFR 감사 대상에서 소규모 기업을 제외해왔다.

[그림6] 미국 소규모 기업에 대한 ICFR 감독 완화 추이

소규모 기업 감사 유예 <sup>25)</sup>	<b>Non-accelerated Filer: 시가총액 \$7,500만 미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가 총액 \$7,500만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ICFR 감사 의무를 2009.12.15 이후 결산부터 적용하려 했으나, 2010.6.15이후 결산으로 유예됨</li> </ul>
소규모 기업 감사 폐지 <sup>26)</sup>	<b>Non-accelerated Filer: 시가총액 \$7,500만 미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가 총액 \$7,500만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유예되었던 ICFR 감사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면제됨</li> </ul>
소규모 기업의 범위 확대(안) <sup>27)</sup>	<b>Smaller Reporting Company(SRC): 연 매출 기준 추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C가 제안한 개정안에 따르면, 시가총액만을 기준으로 삼던 Accelerated Filer 개념에 연 매출을 추가로 고려하는 SRC 개념을 접목하여, ICFR 감사 면제 대상이 확대</li> <li>• ICFR 감사 면제 대상으로 시가총액 \$7,500만 ~ \$7억인 기업 중 연매출이 \$1억 미만인 기업을 포함</li> </ul>

[표11] Smaller Reporting Company(SRC)와 (Non-)Accelerated Filer 간 관계

구분	현행		개정안	
	시가총액	연 매출	시가총액	연 매출
SRC and Non-Accelerated Filer	\$7,500만 미만	N/A	\$7,500만 미만	N/A
			<b>\$7,500만 ~ \$7억</b>	<b>\$1억 미만</b>
SRC and Accelerated Filer	\$7,500만 ~ \$2억 5,000만	N/A	\$7,500만 ~ \$2억 5,000만	\$1억 이상
	\$2억 5,000만 ~ \$7억	\$1억 미만		
Accelerated Filer (not SRC)	\$2억 5,000만 ~ \$7억	\$1억 이상	\$2억 5,000만 ~ \$7억	\$1억 이상

[표12] (Large) Accelerated → Non-accelerated, Large Accelerated → Accelerated 변환 기준

2분기 마지막 사업일의 시가총액이 다음 금액 이하로 내려갈 경우

구분	변환(Transition) 기준	
	개정 전	개정 후
(Large) Accelerated → Non-accelerated	\$ 5천만	\$6천만
Large Accelerated → Accelerated	\$5억	\$5.6억

25) SEC, "RELEASE NOS. 33-9072; 34-60813; File No. S7-06-03", 2009.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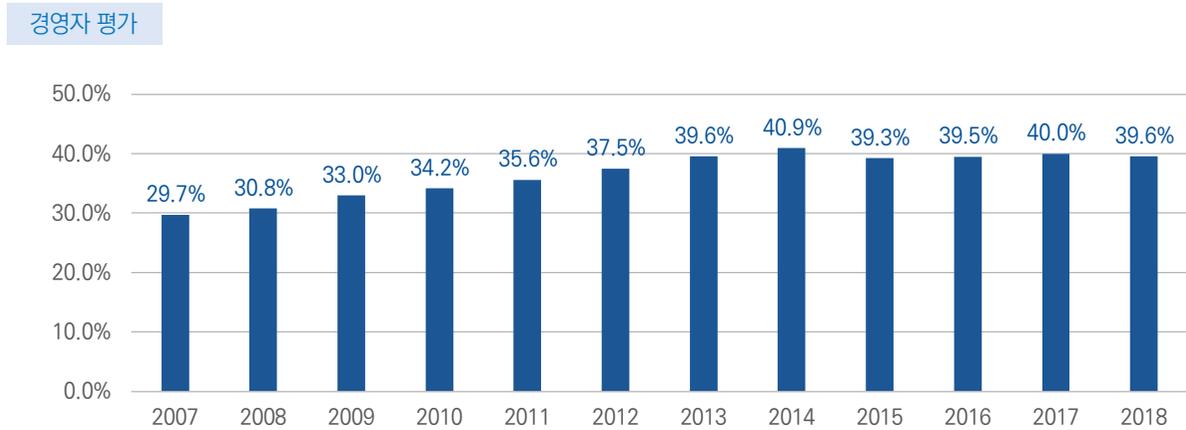
26) SEC, "RELEASE NOS. 33-9142; 34-62914", 2010.9.15

27) SEC, "Release No. 34-85814; File No. S7-06-19", 2019.5.9, 현재는 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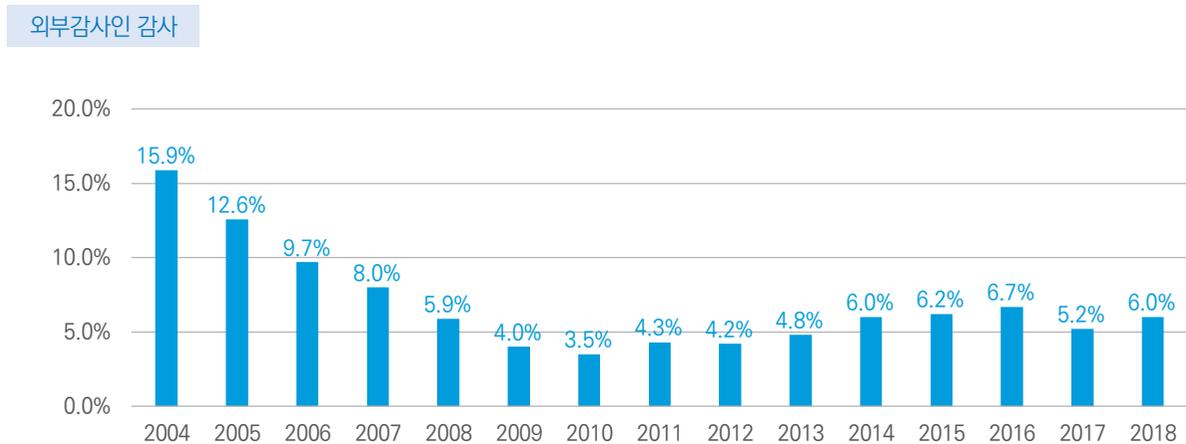
## [Appendix 4] 미국 기업 ICFR 비적정 비중 추이

- 시가총액 \$7,500만 미만의 소규모 기업들은 2007년부터 ICFR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가 수행되어 왔고 시가총액 \$7,500만 이상의 대규모 기업들은 2004년부터 ICFR에 대해 경영진의 평가 뿐 아니라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도 받아왔다.
  - » 경영진의 평가만 받는 기업들의 비적정 비중은 2014년까지 증가한 후 일정 구간 내에서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는 추세이며, 외부감사인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의 비중은 2010년까지 감소한 후 일정 구간 내에서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는 추세이다.

[그림7] 미국 소규모 기업(시가총액 \$7,500만 미만) ICFR 비적정 비중 추이



[그림8] 미국 대규모 기업(시가총액 \$7,500만 이상) ICFR 비적정 비중 추이



## K-SOX TFT

###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

T. +82 2 2112 0479  
E. eunsuphan@kr.kpmg.com

### 김유경 전무이사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리스크 컨설팅 담당  
T. +82 2 2112 0639  
E. youkyoungkim@kr.kpmg.com

### 이주한 전무이사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T. +82 2 2112 0517  
E. juhanlee@kr.kpmg.com

### 한상현 전무이사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T. +82 2 2112 0387  
E. sanghyunhan@kr.kpmg.com

### 박상욱 상무이사

금융 산업 부문 담당  
T. +82 2 2112 6768  
E. sangwookpark@kr.kpmg.com

### 심정훈 상무이사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리스크 컨설팅 담당  
T. +82 2 2112 0338  
E. jshim@kr.kpmg.com

### 전원표 상무이사

조선, 건설 및 의료 산업 부문 담당  
T. +82 2 2112 7634  
E. wjeon@kr.kpmg.com

### 정현 상무이사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T. +82 2 2112 0334  
E. heonjung@kr.kpmg.com

### 허세봉 K-SOX TFT 리더, 부대표

T. +82 2 2112 0212  
E. sebhonghur@kr.kpmg.com

### 이종우 전무이사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T. +82 2 2112 0648  
E. jongwoolee@kr.kpmg.com

### 전용기 전무이사

금융 산업 부문 담당  
T. +82 2 2112 0556  
E. yjeon@kr.kpmg.com

### 박상욱 상무이사

의료 산업 부문 담당  
T. +82 2 2112 0853  
E. sangokpark@kr.kpmg.com

### 신광근 상무이사

전산감사, 정보 리스크 관리 담당  
T. +82 2 2112 0154  
E. kwangkenshin@kr.kpmg.com

### 이성노 상무이사

금융 산업 부문 담당  
T. +82 2 2112 0404  
E. seongnolee@kr.kpmg.com

### 전현호 상무이사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T. +82 2 2112 0638  
E. hyunhojeon@kr.kpmg.com

### 황구철 상무이사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T. +82 2 2112 0293  
E. khwang@kr.kpmg.com

## 보고서 내용 관련 문의처

### 엄수진 책임연구원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T. +82 2 2112 7608  
E. sujineom@kr.kpmg.com

### 강병규 연구원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T. +82 2 2112 3305  
E. byoungkyoukang@kr.kpmg.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up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0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본 보고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